

## 산안법 적용범위 조정,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0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개별 조문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법령 별표1의 업종별 일부 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법 규정 중 유해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정해진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법 적용범위를 구분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해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제도별로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법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업종의 적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및 규모에 법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법 적용범위를 보다 많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유해위험업종인데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 뿌리 산업,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구축

앞으로 뿌리산업 공장의 작업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조업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첨단산업과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지난해 12월 3일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그리고 이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이다. 2010년 기준으로 2만 5천 개 업체에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4차 협력사(87.8%)로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뿌리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99.9%,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뿌리기업은 단순노무직 인력 증가(2001년 30%→2010년 41%), 현장의 고령화 심화(40~50대 63%),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급증(2005년 5.9%→2010년 23.5%) 등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뿌리기업들의 산업재해율은 평균 1.34%로, 중소기업 평균(0.75%)의 2배, 대기업(0.22%)의 6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산재율을 감소시키고, 3D 업종이라는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뿌리산업에 대한 작업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첨단산업과 IT산업을 이들 뿌리산업 공정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수작업 위주의 작업현장에 연속 공정 자동화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6대 업종별 공통공정에 대한 자동화모델을 우선 정립하고, 이 모델에 따라 업종에 맞는 연속공정 체계를 업체에 구축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산재예방 측면에서 제조로봇 설비의 구축도 지원된다. 로봇 생산기업과 뿌리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화 제조로봇 시스템의 설치·도입, 초기운용 및 사용자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멘토제 방식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현장 컨설팅과 생산설비의 개선·유지·보수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고용부, 지게차·천장크레인 산재예방 활동 강화

고용노동부가 지게차와 천장크레인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게차 재해예방대책’과 ‘천장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게차는 제조·건설·운수·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량물의 적재·하역·운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천장크레인의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해 사망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73명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3명(57.6%), 운수업 233명(18.3%), 도·소매업 127명(10%)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37명에 이를 정도다. 천장크레인에서 발생하는 재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700여 명이 재해를 당한 것이다. 사망자도 매해 30여 명에 달할 만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게차와 천장크레인에 의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안전의식 결여 △무자격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안전교육 및 홍보 부족 △안전조치 미준수에 대한 단속 소홀 등을 꼽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 면허(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고용부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좌승식)의 운전자격을 신설키로 했다.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입·좌승식) 중 일반 지게차와 조작방법이 유사한 좌승식 지게차 운전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지게차·천장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기술지원 시에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천장크레인 산재재해 예방 팜플렛을 제작해 지방 관서·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배포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게차, 천장크레인에 의한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 산재 적용 검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중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뿐이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 자가용 등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장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의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성이 있는데다 회사 측의 산재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